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4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기재 정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6 (3)	6 (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200,000,000원	1,200,000,000원

(주1) 상기 이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합병대상회사인 (주)엑셈의 정기주주 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임

[주2] 정정 후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 (2)	6 (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200,000,000원	1,200,000,000원

(주1) 상기 이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합병대상회사인 (주)엑셈의 정기주주 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임

(주2) 전기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3(1)이며,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10,000,000원임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5년 4월 27일

회 사 명 :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관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전 화) 02-3771-9169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 관 수  
(전 화) 02-3771-9169

#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5월 12일(화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9층 비전홀

3. 회의 목적 사항

제 1 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조종암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 이정근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3 호 의안 : 이강녕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4 호 의안 : 정재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3-5 호 의안 : 이상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 최영집 감사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실질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주주총회에서

는 당사가 이를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오니 주주여러분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별첨 7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의 안내사항을 참조하시어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

제1호 의안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통지를 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경우, 매수 청구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정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본인 신분증

(2)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1)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3) 위임인의 날인 (주주총회 참석장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어야 함)

## 9. 기타사항

본 주주총회는 경비절감의 목적을 위해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첨 :

1. 합병의 개요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3. 新정관 조문
4. 이사 후보 약력
5. 감사 후보 약력
6. 임원퇴직금 규정
7.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2015년 04월 2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교보증권 (☎02-3771-9169)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관수 (직인생략)

### **[별첨1] 합병의 개요**

#### 1. 합병당사회사

- (1) 합병회사(존속회사) :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2)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엑셈 (이하 '피합병회사')

#### 2. 합병의 목적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이하 "합병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및 분석과 웹 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 솔루션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주)엑셈과 SPAC 합병을 통한 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재무적 안정성 제고, 대외신뢰도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자금조달능력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3. 합병의 방법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가 (주)엑셈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엑셈은 해산합니다.

#### 4. 합병의 요령

#####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피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7.3319672주를 교부합니다.

피합병회사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회사와 합병시 발행되는 합병신주 교부시 신주가 교부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3)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 5.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비율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 7.3319672로 합니다.

##### (2) 합병비율의 산출근거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4.12.8)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12.8)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12.7)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9.8633173%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030871003(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6.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3,462,285주

#### 7.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6월 13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8.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 2,022원

(2) 반대의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9. 합병주요일정

(1) 합병계약일 : 2014년 12월 8일

(2)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15년 3월 11일

(3) 합병승인주주총회 예정일 : 2015년 5월 12일

(4)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 : 2015년 5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5)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15년 5월 13일부터 2015년 6월 13일까지

(6) 합병기일 : 2015년 6월 15일

(7) 합병신주교부예정일 : 2015년 6월 25일

(8) 합병신주상장예정일 : 2015년 6월 26일

#### 10. 단주 처리방법

합병 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1. 기타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일정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합병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별첨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안내문**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

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엑셈은 상법 제374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1)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22원

(2) 산출근거 :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3)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668원)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령

###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5.03.11)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5.05.11)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2015.05.12)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 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15.05.12)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15.05.12)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4) 접수장소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7층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 4. 기타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3) 주식매수대금 지급방법

- 명부주주 : 현금 또는 주주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거래증권사 본인계좌로 이체

(4)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 제출시한이 1~2일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명부주주 반대의사 통지서를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 17층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 주식담당자 앞 (T: 3771-9169 / F: 3771-9643)

### [별첨3] 新 정관 조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엑셈"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EXEM CO., LTD ( 약호 “XM” )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컨설팅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3. 무역업(수출입업)
4. 정보제공 서비스업
5.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6.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8. 컴퓨터 하드웨어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9. 기업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업
10. 부동산 임대업
11. 부가 통신업
12. 전자 상거래업
13. 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14. 출판, 인쇄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5. 학원업(인터넷 교육, 오라클에 부대되는 교육)
16. 지식컨텐츠 공유 서비스업
17. 지식생산 커뮤니티 환경구축 서비스업
18. 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x-em.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0주(1주의 금액 100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5,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
-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과반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회사의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회사의 자금 환경과 연계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⑪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

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가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제 20조 (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20조의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1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 22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23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4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6 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7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

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8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9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0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 33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제 1 절 이 사

제 34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5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7 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2 절 이 사 회

제 40 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보상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3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 44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45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 6 장 감 사

제 46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7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

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8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9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0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1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 계

제 52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3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4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6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7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종류 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합병 전 (주)엑셈과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상호)와 제2조(목적)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및 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3조(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별첨4] 이사 후보 약력

존속회사의 이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로 합니다.

직책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임기	최대주주 와의 관계
이사 (상근/등기)	조종암 (65.05.05)	(84.03~92.0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94.01~94.12) 포항제철 정보시스템부 개발자 (92.03~94.02) 포항공대 정보통신 대학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 (95.01~96.11) 포스데이타 컨설팅사업부 컨설턴트 (99.03~01.04) 카이스트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96.12~00.04) 한국오라클 DB자문팀 컨설턴트 (00.04~00.12) 에스텍(STTECH)사장 및 대표컨설턴트 (00.01.2~ 現) (주)엑셈 대표이사	3년	본인
이사 (상근/등기)	이정근 (68.07.24)	(87.03~92.02)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92.03~94.02) 포항공대 정보통신 대학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 (95.01~97.06) 포스데이타 컨설팅사업부 컨설턴트 (97.07~00.05) 한국오라클 DB자문팀 컨설턴트 (00.06~03.08) 엑셈 CTO (03.09~09.08) 아이맥스컨설팅 대표 (09.09~12.11) (주)엔키아 기술이사 (12.12~14.05) (주)엠오에스에이 이사 (14.06~ 現) (주)엑셈 전무이사	3년	-
이사 (상근/등기)	이강녕 (68.01.11)	(87.03~94.02)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94.07~00.09) (주)수산중공업 그룹 재무팀 근무 (00.09~02.04) (주)엔피아시스템즈 관리팀 (02.04~ 現) (주) 엑셈 관리이사 CFO	3년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정재훈 (64.12.04)	(94.07~00.06) 오라클 코리아 컨설턴트 (02.11~04.12) (주)3TL 대표이사 (05.01~ 現 ) (주)신시웨이 대표이사	3년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이상면 (64.05.24)	(93.01~98.01) 현대전자 소프트웨어 책임연구원 (99.02~05.12) (주)메디페이스 개발부장 (09.01~12.03) (주)스마트케어웍스 연구소장 (13.03~14.03) (주)데이터와이드 연구소장 (14.03~ 現 ) (주)퓨처에이드 대표이사	3년	-
감사 (비상근/등기)	최영집 (73.10.03)	(00.11~13.12) 삼일회계법인 (13.01~ 現 ) 대성회계법인	감사	

**[별첨5] 감사 후보 약력**

존속회사의 감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선임되는 감사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로 합니다.

직책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임기	최대주주와의 관계
감사 (비상근/등기)	최영집 (73.10.03)	(00.11~13.12) 삼일회계법인 (13.01~ 現 ) 대성회계법인	감사	-

**[별첨6] 임원퇴직금 규정**

임원퇴직금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1.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전항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자를 말한다.

제 3 조 (지급조건)

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속한 임원이 사임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제 4 조 (퇴직금의 산정방법)

- 1.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제 6 조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2. 전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 이전 3월개월간의 급여총액을 말한다.
- 3. 인사 대기발령후 3개월 이내에 의원퇴직할 때에는 대기발령 이전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 4. 인사대기발령자가 면직되었을 때에는 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산출한다.
- 5.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지급이 필요할 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그 성과에 따른 특별상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근속년수의 계산)

- 1. 근속년수는 임원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로 한다. 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 6 조 (지급율)

직 위	재임연수	지급기준
회장, 대표이사	1년	1개월분
부사장, 전무	1년	1개월분
상무이사, 상근이사	1년	1개월분
상근감사	1년	1개월

제 7 조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 8 조 (적용제외)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주)엑셈과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시행한다.
2. 이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관련 사규에 의한다.

**[별첨 7]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2015년 5월 12일 개최되는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속회 및 연회로 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부 의 안 건	찬성	반대
1) 제 1 호 의안 :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 3-1 호 의안 : 조종암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2 호 의안 : 이정근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3 호 의안 : 이강녕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3-4 호 의안 : 정재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3-5 호 의안 : 이상면 사외이사 선임의 건		
4)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 4-1 호 의안 : 최영집 감사 선임의 건		
5)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제 7 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		

<안내사항>

1. 상법 제368조의3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7층 IB2팀)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란에 “○”표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일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주주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윤석 (출석률: 100%)
			찬 반 여부
1	2014.08.2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2	2014.08.26	- 대표주관회사 선정의 건	찬성
3	2014.08.26	- 이사회운영규정 제정의 건 - 감사규정 등의 제정의 건 - 조직 제정의 건	찬성
4	2014.08.26	-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계산서 용역계약 체결의 건 -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한올회계법인)	찬성
5	2014.08.26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찬성
6	2014.08.28	- 코스닥시장 상장 및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동의를 건	찬성
7	2014.09.02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확정건의 건	찬성
8	2014.09.03	- 사규제정의 건	찬성
9	2014.10.31	- 대표주관회사 인수수수료 지급의 건	찬성
10	2014.12.08	- 합병계약체결의 건	찬성
11	2014.12.30	- 규정 제·개정건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건의 건 - 규정 폐지의 건(내부정보관리규정)	찬성
12	2015.01.16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14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13	2015.02.23	- 합병계약서 변경계약 체결건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건의 건	찬성
14	2015.03.20	- 임시주주총회 소집건의 안건 일부 변경건의 건	찬성
15	2015.03.26	- 합병계약서 변경계약 체결건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건의 안건 일부 변경건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1	연간 10,000,000	3,677,420	3,677,420	-

(주1) 2014.08.21부터 2015.03.31일까지 사외이사의 보수(세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는 공모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Paper Company)입니다.

##### (1) SPAC제도의 특징

######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 (3) SPAC의 특징

####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brokerage)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당사는 2014년 8월 21일 자본금 300백만원(전환사채 발행물량 19억원 별도)으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11월 7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총 78억원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당사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된 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공모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용자금은 설립자본금 3억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9억원의 합인 22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회상장의 경우 상장회사의 우발채무 및 채무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합병 법인의 존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SPAC의 경우 공모자금이 비상장회사에게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측면에서 합병 법인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관상 합병의 대상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제조업
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교육 서비스업
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합병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는 해당산업 전문가와 M&A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병심사위원회 및 당사의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합병관련 사항은 2015년 4월 22일에 공시한 '회사합병결정' 및 2015년 4월 22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015년 4월 27일에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참고바랍니다.

(2) 시장점유율

SPAC의 경우 기업인수만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시장점유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SPAC는 우량기업과의 합병만을 사업목적으로 함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SPAC의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가) 경영진의 전문성과 윤리성

SPAC의 경영진은 투자자들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하여 우량한 합병기업을 발굴함과 동시에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회사 경영에 대한 윤리성은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의 성패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 적정 공모규모

SPAC의 공모 규모에 따라 M&A 대상 기업군이 정해지게 되는데 SPAC의 규모가 너무 크면

대상 기업군이 줄어들게 되고 피합법법인의 주주의 희석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너무 작으면 피합법법인 입장에서 SPAC 과의 합병 유인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공모 규모는 SPAC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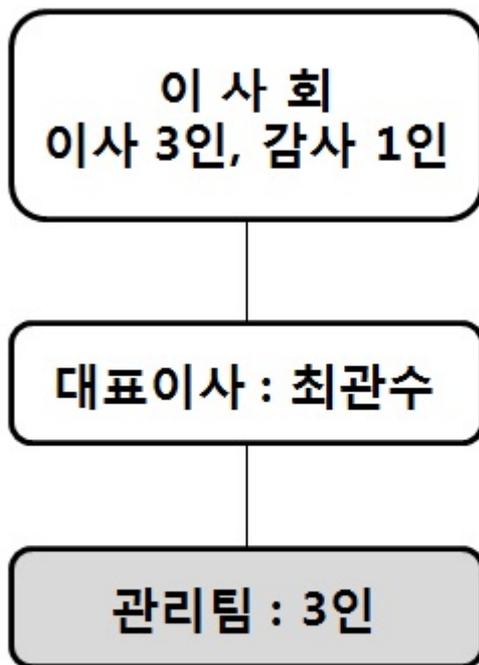
(다) 공모자금 운영의 효율성

SPAC의 공모자금은 공모 이후 3년 이내 기업인수에 실패할 경우 공모자금 중 신탁기관에 예치한 금액 및 이자는 공모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자금 대비 신탁기관 예치금의 비율과 예치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는 SPAC이 기업인수에 실패하여 청산할 경우 공모 주주들의 손실 최소화 여부와 직결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조직도



교보위드스팩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회사의 합병

##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 (1) 합병의 목적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8월 21일 설립되어 당해연도 11월 7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합병 대상인 (주)엑셈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과적인 IT성능 관리 구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및 분석 Tool과 IT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간별 성능 분석이 가능한 End-to-End 성능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회사는 2011년부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매출 143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주)엑셈은 기존에 설치한 일본, 중국 현지법인에 이어 2014년 상반기 미국법을 설립 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외 신뢰도 제고 및 회사 성장을 위한 해외영업력 강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업공개를 계획하였으며, 2014년 10월 교보증권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 하고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엑셈은 코스닥시장에 최대한 빨리 진입하고자 하였으며, 교보증권과 당사는 상장준비 기간 단축의 방안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주)엑셈에 제안하였습니다. (주)엑셈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 이점 및 당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당사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추후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연구개발, 시설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합병대상회사의 사업확장 및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사의 목적에 부합하고 양사의 주주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엑셈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 합병의 주요 일정

구 분		합병법인
이사회결의일		2014-12-08
합병계약일		2014-12-08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		2015-02-23
주주총회(합병승인)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15-03-11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5-03-12
	종료일	2015-03-18
주주총회소집 통지 및 공고		2015-04-2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시작일	2015-04-27
	종료일	2015-05-11

합병반대의사 사전통지기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5-05-12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15-05-12
	종료일	2015-06-01
채권자이의제출공고일		2015-05-13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5-05-13
	종료일	2015-06-13
합병기일		2015-06-15
합병등기(신청)일		2015-06-17
합병신주 교부일		2015-06-25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15-06-26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 (1)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개요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엑셈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최관수	조종암
주 소	본사	서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1208호
	연락처	02-3771-9169	02-6203-6300
설립연월일		2014년 8월 21일	2001년 1월 2일
납입자본금 (주1)		보통주자본금 420,000,000원	보통주자본금 1,600,000,000원
자산총액 (주2)		9,777,861,853원	21,864,629,433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임직원수 (주3)		7명	108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1)		보통주 4,200,000주 (액면 100원)	보통주 3,200,000주(액면 500원)

(주1) 주주총회소집공고일 현재 자본금입니다.

(주2) 자산총액은 2014년 12월 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 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주3) 임직원수는 2014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 (2) 합병의 성사조건

###### (가) 합병조건

## 1)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2017년 10월 31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선행조건]

<합병계약서> 제9조 본건 합병의 선행조건

#### 9.1 SPAC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SPAC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SPAC은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

9.1.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SPAC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엑셈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상장승인이 취득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9.1.2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에 따른 엑셈의 모든 진술보장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9.1.3 확약. 엑셈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9.1.4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엑셈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9.2 엑셈의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엑셈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엑셈은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다.

9.2.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SPAC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엑셈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상장승인이 취득되고,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9.2.2 진술 및 보장. 본 계약에 따른 SPAC의 모든 진술보장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9.2.3 확약. SPAC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및 기타 약정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9.2.4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SPAC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합병계약서> 제10조 본 계약의 해제

### 10.1 해제사유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해제될 수 있다.

10.1.1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0.1.2 상장승인이 거부되거나 또는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 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0.1.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장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1.4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0.2 해제의 효과

10.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0.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0.2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 및 제 11.9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

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계약사항]

<주주간 계약서> 제 3 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익을 제기하거나 상법 제 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 기 201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자 산		
Ⅰ.유동자산		9,777,861,853
현금및현금성자산	942,108,861	
단기금융상품	8,800,000,000	
미수수익	35,703,452	
당기법인세자산	49,540	
자 산 총 계		9,777,861,853
부 채		
Ⅰ.유동부채		1,374,000
미지급금	1,374,000	
Ⅱ.비유동부채		1,744,690,528
전환사채	1,690,815,088	
이연법인세부채	53,875,440	
부 채 총 계		1,746,064,528
자 본		
Ⅰ.자본금		420,000,000

II.자본잉여금		7,500,257,500
III.기타자본항목		177,729,214
IV.이익잉여금(결손금)		(66,189,389)
자 본 총 계		8,031,797,32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777,861,853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 기 (2014. 08. 2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 기	
I.영업수익		-
II.영업비용(주석11,17)		79,827,010
1. 판매비와관리비	79,827,010	
III.영업이익(손실)		(79,827,010)
IV.금융수익(주석5,12)		36,057,363
V.금융원가(주석5,12,17)		18,673,055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2,442,702)
VII.법인세비용(주석13)		3,746,687
VIII.당기순이익(손실)		(66,189,389)
IX.기타포괄손익		-
X.총포괄손익		(66,189,389)
XI.주당손익(주석14)		
1. 기본및희석주당손익		(33)

(피합병회사)

【피합병회사명】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4 기 2014. 12. 31 현재

제 13 기 2013.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4 기	제 13 기 (감사받지 않음)
자산		
유동자산	14,592,852,699	14,358,945,045
현금및현금성자산	7,295,988,406	7,966,592,085
단기금융상품	3,013,167,747	3,012,696,634
매출채권	3,703,594,209	3,005,537,067
기타유동금융자산	474,866,488	301,507,627
기타유동자산	105,235,849	72,611,632
비유동자산	7,271,776,734	5,201,332,862
장기금융상품	2,036,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100,000,000	109,000,00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367,357,600	346,917,600

유형자산	2,943,340,354	2,771,464,316
투자부동산	-	536,393,842
무형자산	1,323,161,934	896,794,64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3,871,400	212,851,727
이연법인세자산	308,045,446	327,910,735
<b>자산총계</b>	<b>21,864,629,433</b>	<b>19,560,277,907</b>
<b>부채</b>		
<b>유동부채</b>	<b>3,952,072,835</b>	<b>5,415,722,900</b>
유동성장기차입금	148,000,000	189,66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2,317,804,838	2,936,805,747
기타유동부채	1,027,478,777	1,824,421,248
당기법인세부채	458,789,220	464,835,905
<b>비유동부채</b>	<b>1,992,709,426</b>	<b>569,000,000</b>
장기차입금	1,992,709,426	259,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10,000,000
<b>부채총계</b>	<b>5,944,782,261</b>	<b>5,984,722,900</b>
<b>자본</b>		
자본금	1,600,000,000	1,798,400,000
기타자본항목	(1,442,045,615)	(2,320,480)
이익잉여금	15,761,892,787	11,779,475,487
<b>자본총계</b>	<b>15,919,847,172</b>	<b>13,575,555,007</b>
<b>부채와자본총계</b>	<b>21,864,629,433</b>	<b>19,560,277,907</b>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3 기 (2013.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4 기	제 13 기 (감사받지 않음)
매출액	14,252,366,700	15,882,581,779
매출원가	5,448,122,553	5,216,355,372
매출총이익	8,804,244,147	10,666,226,407
판매비와관리비	3,991,203,578	6,642,693,336
영업이익	4,813,040,569	4,023,533,071
기타영업외수익	40,925,304	15,252,429
기타영업외비용	158,977,059	336,367,851
금융수익	141,034,882	115,900,152
금융비용	113,184,067	275,808,6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722,839,629	3,542,509,153
법인세비용	739,262,089	452,076,574
당기순이익	3,983,577,540	3,090,432,579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이익	3,983,577,540	3,090,432,579
기본주당순이익	1,196	859

※ 기타 참고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엑셀은 상법 제374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6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 60조 제6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60조 제6항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7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2015.03.26)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5년 6월 12일의 2영업일 전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치금은 7,889,497,807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390만주로 나눈 금액은 2,022.95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22원을 당사의 주식

매수 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22원
산출방법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예치금액(A)	7,800,000,000	-
이자금액(B)	105,789,370	예상 이자율 2.24%
원천징수금액(C)	16,291,563	세율 15.4%
총 지급금액((A) + (B) - (C) - (D))	7,889,497,807	-
주식수	3,900,000주	-
주식매수예정가격	2,022	원단위 미만 절사

협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4년 12월 8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나,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2014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아 상장일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4.12.05	2,750	141,057	387,906,750
2014.12.04	2,710	428,113	1,160,186,230
2014.12.03	2,810	192,389	540,613,090
2014.12.02	2,705	152,973	413,791,965
2014.12.01	2,600	92,093	239,441,800
2014.11.28	2,600	94,552	245,835,200
2014.11.27	2,670	41,710	111,365,700
2014.11.26	2,630	67,344	177,114,720
2014.11.25	2,620	256,604	672,302,480

2014.11.24	2,530	55,957	141,571,210
2014.11.21	2,560	77,571	198,581,760
2014.11.20	2,480	151,231	375,052,880
2014.11.19	2,520	314,037	791,373,240
2014.11.18	2,555	149,203	381,213,665
2014.11.17	2,420	330,686	800,260,120
2014.11.14	2,600	546,357	1,420,528,200
2014.11.13	2,565	1,266,068	3,247,464,420
2014.11.12	2,425	667,845	1,619,524,125
2014.11.11	2,570	2,586,968	6,648,507,760
2014.11.10	2,780	4,375,728	12,164,523,840
2014.11.07	2,585	2,806,442	7,254,652,57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주1)			2,635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647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723
산술평균가격 (D, D=(A+B+C)/3)			2,668

(출처 : 한국거래소)

주1)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2014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아 상장일까지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22원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668원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668원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협의를 위해 제시하는 주식매수 예정가액(2,022원)은 주주간 형평과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가 보유한 자금한도를 고려하여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 분배시의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액(2,668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나. (주)엑셈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엑셈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엑셈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7,890원입니다. 이는 2015년 3월 26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이며,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엑셈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엑셈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합병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4년 12월 8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 12월 8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 12월 7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9.8633173%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5.03.11)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5.05.11)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2015.05.12)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15.05.12)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2015.05.12)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라. 접수장소

##### (1)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부주주

회사명	주소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주)엑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동 1208호(염창동, 우림비즈니스센터)

#####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와 (주)엑셈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제10조 본 계약의 해제

10.1 해제사유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해제될 수 있다.

10.1.1 양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0.1.2 상장승인이 거부되거나 또는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 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0.1.3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장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0.1.4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공모전주주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모전 주주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 [주주간 계약서]

제 3 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익을 제기하거나 상법 제 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지급시기(예정)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주)엑셈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지급방법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부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b>제1장 총칙</b></p> <p>제1조 (상호) 이 회사는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yobo With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 표기한다.</p> <p>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및 사무소 등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p> <p>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b>제1장 총칙</b></p> <p>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엑셈"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EXEM CO., LTD ( 약호 “XM” ) 라 표기한다.</p> <p>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컨설팅업</li> <li>2.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li> <li>3. 무역업(수출입업)</li> <li>4. 정보제공 서비스업</li> <li>5.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li> <li>6.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li> <li>7.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li> <li>8. 컴퓨터 하드웨어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li> <li>9. 기업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업</li> <li>10. 부동산 임대업</li> <li>11. 부가 통신업</li> <li>12. 전자 상거래업</li> <li>13. 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li> <li>14. 출판, 인쇄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li> <li>15. 학원업(인터넷 교육, 오라클에 부대되는 교육)</li> </ol>	<p>합병 후 소멸법인인 (주)엑셈의 업무 영위를 위한 정관 변경</p>

<p><b>제2장 자본 및 주식</b></p> <p>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p> <p>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p> <p>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0주로 한다.</p> <p>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거래소 코</p>	<p>16. 지식컨텐츠 공유 서비스업</p> <p>17. 지식생산 커뮤니티 환경구축 서비스업</p> <p>18. 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p> <p>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p> <p>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x-em.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b>제 2 장 주 식</b></p> <p>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p> <p>제 6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00,000주(1주의 금액 100원 기준)로 한다.</p> <p>제 7 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p>	
---------------------------------------------------------------------------------------------------------------------------------------------------------------------------------------------------------------------------------------------------------------------------------------------------------------------------------------------------------------------------------------------------------------------------------------------------------------------------------------------------------------------------------------------------------------------------------------------------------------	----------------------------------------------------------------------------------------------------------------------------------------------------------------------------------------------------------------------------------------------------------------------------------------------------------------------------------------------------------------------------------------------------------------------------------------------------------------------------------------------------------------------------------------------------------------------------------------	--

<p>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p> <p>1.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에 필요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p> <p>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p> <p>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가 결의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부여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금액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p>	<p>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p> <p>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p> <p>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p> <p>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p> <p>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p> <p>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5,000,000주로 한다.</p> <p>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p> <p>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p> <p>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p>	
--------------------------------------------------------------------------------------------------------------------------------------------------------------------------------------------------------------------------------------------------------------------------------------------------------------------------------------------------------------------------------------------------------------------------------------------------------------------------------------------------------------------------------------------------------------------------------------------------------------------------------------------------------------------------------------------------------------------------------------------------------------------------------------------------------	-----------------------------------------------------------------------------------------------------------------------------------------------------------------------------------------------------------------------------------------------------------------------------------------------------------------------------------------------------------------------------------------------------------------------------------------------------------------------------------------------------------------------------------------------------------------------------------------------------------------------------------------------------------------------------------------------------------------------------------------------------------------------------------------------------------------------------------------------------	--

<p>다. 그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은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p> <p>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⑥ 주식매수선택권은 합병법인의 신주가 상장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만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p>	<p>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다.</p> <p>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p> <p>1. 회사의 주주들에 의한 과반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회사의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회사의 자금 환경과 연계되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p> <p>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p> <p>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⑪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p>제 10 조 (신주인수권)</p> <p>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p>	
-------------------------------------------------------------------------------------------------------------------------------------------------------------------------------------------------------------------------------------------------------------------------------------------------------------------------------------------------------------------------------------------------------------------------------------------------------------------------------------------------------------------------------------------------------------------------------------------------------------------------------------------------------------------------------------------------------------------------------------------------------------------------------------------------------------------------	-----------------------------------------------------------------------------------------------------------------------------------------------------------------------------------------------------------------------------------------------------------------------------------------------------------------------------------------------------------------------------------------------------------------------------------------------------------------------------------------------------------------------------------------------------------------------------------------------------------------------------------------------------------------------------------------------------------------------------------------------------------------------------	--

<p>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li> <li>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li> <li>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li>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p> <p>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li> <li>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li> <li>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li> <li>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li> </ol>	<p>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li> <li>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li>6.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li> <li>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p>	
----------------------------------------------------------------------------------------------------------------------------------------------------------------------------------------------------------------------------------------------------------------------------------------------------------------------------------------------------------------------------------------------------------------------------------------------------------------------------------------------------------------------------------------------------------------------------------------------------------------------------------------------------------------------------------------------------------------------------------------------------------------------------------------------------------------------------	-----------------------------------------------------------------------------------------------------------------------------------------------------------------------------------------------------------------------------------------------------------------------------------------------------------------------------------------------------------------------------------------------------------------------------------------------------------------------------------------------------------------------------------------------------------------------------------------------------------------------------------------------------------------------------------------------------------------------------------------------------------------------------------------------------------------------------------------------	--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권의 최

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초 모집 전까지 상법이 정하는 사채발행 한도 이내에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55조 제2항 규정의 예치자금 등은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17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한 날부터 2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

<p>제19조 (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p> <p>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p> <p>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 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p>	<p>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p> <p>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li> <li>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li> <li>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p>	

<p>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p> <p>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p>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 13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p> <p>제 14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p> <p>제 15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	----------------------------------------------------------------------------------------------------------------------------------------------------------------------------------------------------------------------------------------------------------------------------------------------------------------------------------------------------------------------------------------------------------------------------------------------------------------------------------------------------------------------------------------------------------------------------------------------------------------------------------------------------------------------------	--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 공모전 주주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 중에서 공모주식(회사 주식 중 최초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의 의한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이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이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 17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이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p>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p> <p>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p> <p>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b>제5장 이사, 이사회</b></p> <p>제31조 (이사의 자격 및 수)</p> <p>① 자본시장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이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p> <p>②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p> <p>제32조 (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8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li>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li> </ol>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	-----------------------------------------------------------------------------------------------------------------------------------------------------------------------------------------------------------------------------------------------------------------------------------------------------------------------------------------------------------------------------------------------------------------------------------------------------------------------------------------------------------------------------------------------------------------------------------------------------------------------------------------------------------------------------------------------------------------------------------------------------------------------------------------------------------------------------------	--

<p>제33조 (이사의 임기)</p> <p>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제34조 (이사의 보선)</p> <p>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본 제34조에 따라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35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p> <p>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p> <p>제36조 (이사의 직무)</p> <p>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 이사, 사외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병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2월(또는 36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9 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p> <p>제 20조 (교환사채의 발행)</p> <p>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20조의2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p>	
-----------------------------------------------------------------------------------------------------------------------------------------------------------------------------------------------------------------------------------------------------------------------------------------------------------------------------------------------------------------------------------------------------------------------------------------------------------------------------------------------------------------------------------------------------------------------------------------------------------------------------------------------------------------------------	------------------------------------------------------------------------------------------------------------------------------------------------------------------------------------------------------------------------------------------------------------------------------------------------------------------------------------------------------------------------------------------------------------------------------------------------------------------------------------------------------------------------------------------------------------------------------------------------------------------------------------------------------------------------------------------------------------------------------------------------	--

<p>제37조 (이사의 보고의무)</p> <p>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①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p> <p>② 이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보수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따르되, 성과보수지급의 최종결정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p> <p>제39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p> <p>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 21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4조(명의개서대리인),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4장 주 주 총 회</b></p> <p>제 22 조 (소집시기)</p> <p>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 23 조 (소집권자)</p> <p>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p> <p>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4 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p>	
---------------------------------------------------------------------------------------------------------------------------------------------------------------------------------------------------------------------------------------------------------------------------------------------------------------------------------------------------------------------------------------------------------------------------------------------------------------------------------------------------------------------------------------------------------------------------------------------------------------------------------------------------------------------------------------------------------	--------------------------------------------------------------------------------------------------------------------------------------------------------------------------------------------------------------------------------------------------------------------------------------------------------------------------------------------------------------------------------------------------------------------------------------------------------------------------------------------------------------------------------------------------------------------------------------------------------------------------------------------------------------------------------------------------------------------------	--

<p>제40조 (이사회 결의방법)</p> <p>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 등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1조 (이사회 의사록)</p> <p>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 25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p>	
<p>제42조 (위원회)</p> <p>①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6 조 (의장)</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p> <p>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27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p> <p>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p>	
<p>제43조 (상담역 및 고문)</p> <p>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p>	<p>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p>	

<p><b>제6장 감사</b></p> <p>제44조 (감사의 수) 이 회사는 1명의 감사를 둔다.</p> <p>제45조 (감사의 자격 및 선임)</p> <p>① 자본시장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이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p> <p>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③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p>④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제46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p> <p>제47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p>	<p>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p> <p>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 28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p> <p>제 29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p> <p>제 30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p> <p>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31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p> <p>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32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p>	
------------------------------------------------------------------------------------------------------------------------------------------------------------------------------------------------------------------------------------------------------------------------------------------------------------------------------------------------------------------------------------------------------------------------------------------------------------------------------------------------------------------------------------------------------------------------------------------------------------------------------------------------	--------------------------------------------------------------------------------------------------------------------------------------------------------------------------------------------------------------------------------------------------------------------------------------------------------------------------------------------------------------------------------------------------------------------------------------------------------------------------------------------------------------------------------------------------------------------------------------------------------------------------------------------------------------------------	--

<p>서 이를 선임한다.</p> <p>제48조 (감사의 직무)</p> <p>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제49조 (감사록)</p> <p>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50조 (감사의 보수)</p> <p>①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p>	<p>있는 경우를 제외</p> <p>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p> <p>제 33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p> <p>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p> <p>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p> <p>제 1 절 이 사</p> <p>제 34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제 35 조 (이사의 선임)</p> <p>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36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p>	
---------------------------------------------------------------------------------------------------------------------------------------------------------------------------------------------------------------------------------------------------------------------------------------------------------------------------------------------------------------------------------------------------------------------------------------------------------------------------------------------------------------------------------------------------------------------------------------------------------------------------------------------------	----------------------------------------------------------------------------------------------------------------------------------------------------------------------------------------------------------------------------------------------------------------------------------------------------------------------------------------------------------------------------------------------------------------------------------------------------------------------------------------------------------------------------------------------------------------------------------------------------------------------------	--

<p><b>제7장 계 산</b></p> <p>제51조 (사업년도)</p> <p>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5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p> <p>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차대조표</li> <li>2. 손익계산서</li> <li>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li> </ol> <p>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p> <p>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제 37 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38 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p> <p>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p> <p>제 2 절 이 사 회</p> <p>제 40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p>	
----------------------------------------------------------------------------------------------------------------------------------------------------------------------------------------------------------------------------------------------------------------------------------------------------------------------------------------------------------------------------------------------------------------------------------------------------------------------------------------------------------------------------------------------------------------------------------------------------------------------------------------------------------------------------------------------------------------------------------------------	----------------------------------------------------------------------------------------------------------------------------------------------------------------------------------------------------------------------------------------------------------------------------------------------------------------------------------------------------------------------------------------------------------------------------------------------------------------------------------------------------------------------------------------------------------------------------------------------------------------------------------------------	--

<p>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p> <p>이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4조 (이익금의 처분)</p> <p>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기타의 법정적립금</li> <li>3. 배당금</li> <li>4. 임의적립금</li> <li>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li> </ol> <p>제55조(이익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p> <p>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p> <p>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p>	<p>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p> <p>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41 조 (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p> <p>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제 42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 42 조의 2 (위원회)</p> <p>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p>	
------------------------------------------------------------------------------------------------------------------------------------------------------------------------------------------------------------------------------------------------------------------------------------------------------------------------------------------------------------------------------------------------------------------------------------------------------------------------------------------------------------------------------------------------------------------------------------------------------------------------------	--------------------------------------------------------------------------------------------------------------------------------------------------------------------------------------------------------------------------------------------------------------------------------------------------------------------------------------------------------------------------------------------------------------------------------------------------------------------------------------------------------------------------------------------------------------------------------------------------------------------------------------------------------------------------------------------------------------------------------------------------------------------------------	--

<p><b>제8장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b></p> <p>제57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의무, 인출제한 등)</p> <p>①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등에게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p> <p>②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운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등을 인출할 수 있다.</p> <p>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p> <p>2. 이 회사가 제61조에 따라 해산하여 예치자금등을 제62조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p> <p>제58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p> <p>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p> <p>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p>	<p>회를 둔다.</p> <p>1. 보상위원회</p> <p>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p> <p>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43 조 (상당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p> <p>제 3 절 대 표 이 사</p> <p>제 44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제 45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p> <p>제 6 장 감 사</p> <p>제 46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p> <p>제 47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p>	
------------------------------------------------------------------------------------------------------------------------------------------------------------------------------------------------------------------------------------------------------------------------------------------------------------------------------------------------------------------------------------------------------------------------------------------------------------------------------------------------------------------------------------------------------------------------------------------------------------------------------------------------------------------------------------------------------------------------------------------------------	-----------------------------------------------------------------------------------------------------------------------------------------------------------------------------------------------------------------------------------------------------------------------------------------------------------------------------------------------------------------------------------------------------------------------------------------------------------------------------------------------------------------------	--

<p>다.</p> <p>제59조 (임직원의 의무)</p> <p>이 회사의 임직원은 합병 전에 합병대상 기업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설,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60조 (회사의 합병)</p> <p>①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제57조에 의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 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p> <p>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p> <p>1.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 등”이라 한다)</p> <p>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p>	<p>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p> <p>제 48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p> <p>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 (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 49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p> <p>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p> <p>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p>	
--------------------------------------------------------------------------------------------------------------------------------------------------------------------------------------------------------------------------------------------------------------------------------------------------------------------------------------------------------------------------------------------------------------------------------------------------------------------------------------------------------------------------------------------------------------------------------------------------------------------------------------------------------------------------------------------------------------------------------------------------------------------------------	-------------------------------------------------------------------------------------------------------------------------------------------------------------------------------------------------------------------------------------------------------------------------------------------------------------------------------------------------------------------------------------------------------------------------------------------------------------------------------------------------------------------------------------------------------------------------------------------------------------------------------------------------------------------------------------------------------------------------------------------------------------------------------------------------------------------------	--

<p>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 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p> <p>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p> <p>⑤ 본 조 제2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p> <p>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57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등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제61조 (회사의 해산)</p> <p>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움을 구할 수 있다.</p> <p>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 50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p> <p>제 51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p> <p><b>제7장 회 계</b></p> <p>제 52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 53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p>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li> <li>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li> <li>3. 이 회사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li> </ol> <p>제62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p> <p>① 제61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모전 주주는 주식(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li> </ol> <p>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 재산을 분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li> </ol>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4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55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기타의 법정준비금</li> <li>3. 배당금</li> <li>4. 임의적립금</li> <li>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li> </ol> <p>제 56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p>	
-----------------------------------------------------------------------------------------------------------------------------------------------------------------------------------------------------------------------------------------------------------------------------------------------------------------------------------------------------------------------------------------------------------------------------------------------------------------------------------------------------------------------------------------------------------------------------------------------------------------------------------------------------------------------------------------------------------------------------------------------------------------------------------------------------------------------------------------------------------------------------------------------------------------------------------------------------------------	-----------------------------------------------------------------------------------------------------------------------------------------------------------------------------------------------------------------------------------------------------------------------------------------------------------------------------------------------------------------------------------------------------------------------------------------------------------------------------------------------------------------------------------------------------------------------------------------------------------------------------------------------------------------------------------------------------------------------------------------------------------	--

<p>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p> <p>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p> <p>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p> <p>① 이 회사는 상장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업</li> <li>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li> <li>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li> <li>4. 건설업</li> </ol>	<p>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p> <p>제 57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li> <li>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li> <li>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li> <li>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li> <li>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li> <li>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li> </ol> <p>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p>	
----------------------------------------------------------------------------------------------------------------------------------------------------------------------------------------------------------------------------------------------------------------------------------------------------------------------------------------------------------------------------------------------------------------------------------------------------------------------------------------------------------------------------------------------------------------------------------------------------------------------------------------------------------------------------------------------------------------------------------------------------------------------------------------------------------------------------------------------	--------------------------------------------------------------------------------------------------------------------------------------------------------------------------------------------------------------------------------------------------------------------------------------------------------------------------------------------------------------------------------------------------------------------------------------------------------------------------------------------------------------------------------------------------------------------------------------------------------------------------------------------------------------------------------------------------------------------------------------------------------------------------------------------------------------------	--

<p>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p> <p>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p> <p>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p> <p>8. 교육 서비스업</p> <p>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p> <p><b>부 칙</b></p> <p>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p>2. (세칙 및 내규) 이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p> <p>3.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르기로 한다.</p> <p>4.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장(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제57조 내지 제63조}은 이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만 적용하며, 위 합병등기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⑤ 제9조의 종류 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p><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합병 전 (주)엑셈과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상호)와 제2조(목적)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세칙 및 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p> <p>제3조(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르기로 한다.</p>	
----------------------------------------------------------------------------------------------------------------------------------------------------------------------------------------------------------------------------------------------------------------------------------------------------------------------------------------------------------------------------------------------------------------------------------------------------------------------------------------------------------------------------------------------------------------------------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종암	1965.05.05	미해당	-	이사회
이정근	1968.07.24	미해당	-	이사회
이강녕	1968.01.11	미해당	-	이사회
정재훈	1964.12.04	해당	-	이사회
이상면	1964.05.24	해당	-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 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조종암	(주)엑셈 대표이사	(84.03~92.02)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94.01~94.12) 포항제철 정보시스템부 개발자 (92.03~94.02) 포항공대 정보통신 대학원 소프트 웨어학과 졸업 (95.01~96.11) 포스데이타 컨설팅사업부 컨설턴 트 (99.03~01.04) 카이스트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96.12~00.04) 한국오라클 DB자문팀 컨설턴트 (00.04~00.12) 에스텍(STTECH)사장 및 대표컨설 턴트 (00.01.2~ 現) (주)엑셈 대표이사	-
이정근	(주)엑셈 이사	(87.03~92.02)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졸업 (92.03~94.02) 포항공대 정보통신 대학원 소프트 웨어학과 졸업 (95.01~97.06) 포스데이타 컨설팅사업부 컨설턴 트 (97.07~00.05) 한국오라클 DB자문팀 컨설턴트	-

		(00.06~03.08) 엑셈 CTO (03.09~09.08) 아이맥스컨설팅 대표 (09.09~12.11) (주)엔키아 기술이사 (12.12~14.05) (주)엠오에스에이 이사 (14.06~ 現 ) (주)엑셈 전무이사	
이강녕	(주)엑셈 이사	(87.03~94.02)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94.07~00.09) (주)수산중공업 그룹 재무팀 근무 (00.09~02.04) (주)엔피아시스템즈 관리팀 (02.04~ 現 ) (주) 엑셈 관리이사 CFO	-
정재훈	(주)신시웨이 대표이사	(94.07~00.06) 오라클 코리아 컨설턴트 (02.11~04.12) (주)3TL 대표이사 (05.01~ 現 ) (주)신시웨이 대표이사	-
이상면	(주) 퓨처에이드 대표이사	(93.01~98.01) 현대전자 소프트웨어 책임연구원 (99.02~05.12) (주)메디페이스 개발부장 (09.01~12.03) (주)스마트케어웍스 연구소장 (13.03~14.03) (주)데이터와이드 연구소장 (14.03~ 現 ) (주)퓨처에이드 대표이사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영집	1973.10.03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영집	대성회계법인 회계사	(00.11~13.12) 삼일회계법인	-

	(13.01~ 現 ) 대성회계법인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 (2)	6 (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200,000,000원	1,200,000,000원

(주1) 상기 이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합병대상회사인 (주)엑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임

(주2) 전기 교보위드기업인수목적(주)의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3(1)이며,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10,000,000원임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원	100,000,000원

(주) 상기 감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합병대상회사인 (주)엑셈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임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p>임원퇴직금 규정</p> <p>제 1 조 (목적)</p> <p>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적용범위)</p>
-----------------------------------------------------------------------------------------------------

1. 이 규정은 회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전항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자를 말한다.

### 제 3 조 (지급조건)

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속한 임원이 사임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 제 4 조 (퇴직금의 산정방법)

1.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제 6 조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전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 이전 3월개월간의 급여총액을 말한다.
3. 인사 대기발령후 3개월 이내에 의원퇴직할 때에는 대기발령 이전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4. 인사대기발령자가 면직되었을 때에는 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산출한다.
5. 회사의 필요에 의해 지급이 필요할 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그 성과에 따른 특별상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조 (근속년수의 계산)

1. 근속년수는 임원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로 한다. 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근속년수에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 제 6 조 (지급율)

직 위	재임연수	지급기준
회장, 대표이사	1년	1개월분
부사장, 전무	1년	1개월분
상무이사, 상근이사	1년	1개월분
상근감사	1년	1개월

### 제 7 조 (지급방법)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 제 8 조 (적용제외)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주)엑셈과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시행한다.
2. 이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관련 사규에 의한다.

